국제교류본부운영규정 5-1-76

규정번호	5-1-76
제정일자	2025.9.29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2차
관리부서	글로벌교육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국제교류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본부에는 글로벌교육센터(글로벌교육팀), 유학생지원센터(유학생지원팀), 한국어교육센터(한국어교육팀)(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국제교류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센터의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기능) 본부는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글로벌교육센터 기능) 글로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국제화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리
3. 외국 대학·기관·단체 교류 협력
4. 외국 대학과 교환학생 상호 파견(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포함)
5.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편·입학 지원
7. 해외인턴 및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8. 글로벌현장학습(해외현장실습) 국고지원사업 운영
9. 재학생 외국어교육 지원
10. 국제교류 연계기관 교직원 해외연수·파견 및 교류
11. 국제교류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운영
12. 기타 국제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7.20.]

제5조(유학생지원센터 기능) 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학생 전담학과 학사관리 및 운영 지원
2.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연계 및 현장실습 지원

3.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어학,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운영
4. 유학생 비자(체류) 관리(거주, 보험 등) 및 행정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장학) 안내 및 학사(학업) 상담 지원
6.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한국문화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7. 긴급 상황(질병, 안전, 법률 등) 발생 시 대응 지원 체계 운영
8.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자치활동 지원
9.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10.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1. 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업

[전문개정 2026.7.20.]

제6조(한국어교육센터 기능)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및 교재 개발
2.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한국어 강사 위촉
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시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5. 한국어 특강 실시
6. 한국어 모의 토픽 시험 실시
7. 한국어 경진 대회 실시
8. 한국어 학습 상담
9.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 제공
10. 해외 자매 대학의 한국어 교육자 초빙 세미나 개최
11. 해외 한국어교육 전담관리(파견 한국어강사 관리 포함)
12. 기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① 국제교류본부 산하 각 센터(글로벌교육센터, 유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의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관련 대외 협력, 국고지원사업, 교류협정 체결 등 본부 차원의 중요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글로벌교육센터장, 유학생지원센터장, 한국어교육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외현지 자문위원, 교내·외 자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국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5조)